



상주시의회 공고 제2017 - 10 호

「상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례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상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민원과 관련한 사항, 안전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상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장례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참조 :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화 : 054-537-7841, FAX : 054-535-9854,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 sangjuCouncil.go.kr](http://www.sangjuCounci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의견 내용	비고